

서울동부지방법원

제 15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1가합465 채무부존재확인
원 고 ○○○(보험회사)
피 고 형○○ (여, 1983년생)
판 결 선 고 2011. 9. 20.

주 문

1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2,807,46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6/1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0. 1. 11. 주식회사 ○○○○○레저(이하 '○○○○○레저'라 한다)와 사이에 ○○○○○레저가 운영하는 ○○광역시 소재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피고는 2010. 2. 16. 11:00경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방문하여 관람을 마친 후 보트에서 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사고는 보트나 시설물의 결함이나 안전조치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주의하게 보트에서 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○○○○○레저 및 원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

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운영하는 ○○○○○레저는 경사진 장소에서 하선하는 승객들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, ○○○○○레저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2.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

가. 손해배상책임의 성립

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은 보트를 이용하여 지하의 수로를 관람하는 시설로서, 관람을 마친 승객이 하선하는 장소는 물이 묻기 쉽고, 경사진 비탈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,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운영하는 ○○○○○레저로서는 보트에서 하선하는 승객들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고, 그 직원으로 하여금 승객들의 안전한 하선을 도와주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, ○○○○○레저가 승객들이 보트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,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, 승객들이 내리는 장소에 부직포가 깔려 있었으나 바닥 전체를 완전히 덮지 못하여 타일로 된 바닥면의 일부가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, 결국 이 사건 사고는 ○○○○○레저가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나. 책임의 제한

한편, 피고로서도 보트에서 하선할 때 전방을 주시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,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, 이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%로 제한한다.

3. 손해배상책임의 인정범위

아래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.

가. 일실수입

1) 직업, 소득, 가동기간

가) 당사자들의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,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,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 교육전문가 1~3년 미만 경력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반면,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아무런 직업이 없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나) 판단

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는 2009. 8. 21. ○○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석사(수학교육전공) 학위를 취득하고, 중등학교 정교사(2급, 수학)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나, 그러한 자격을 취득한 이후인 이 사건 사고 당시나 현재까지도 피고가 교육전문가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교육전문가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피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피고의 가동연한인 만 60세에 달하는 2043. 3. 10.까지 매월 22일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었을 노임을 기초로 피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.

2)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

가) 입원기간

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0. 5. 6.부터 같은 달 12.까지 △△병원에서

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.

나) 노동능력상실률

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 수술을 받아 관절강직이 있는 경우로서 약 10%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.

다)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

① 입원기간인 2010. 5. 6.부터 2010. 5. 12.까지 : 100%

② 위 입원기간을 제외하고 2010. 2. 16.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43. 3. 10.까지
: 10%

3) 계산 : 39,324,463원(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)

나. 기왕치료비 : 751,580원

다. 과실상계

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이 40%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60%로 제한한다.

라. 위자료 : 3,000,000원

피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,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, 나이, 성별,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,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

마. 공제

○○○○○레저가 지급한 피고의 치료비 86,200원 중 피고의 과실 상당 금액인 34,480원(= 86,200원 × 40%) 및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가도보험금 4,203,680원 등 합계 4,238,160원(= 34,480원 + 4,203,680원)을 원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

한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3, 4호증, 을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바. 소결

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2,807,465원(= (일실이익 39,324,463원 + 기왕치료비 751,580원) × 60% + 위자료 3,000,000원 - 가도보험금 등 4,238,160원)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,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조휴욱

 판사 유기웅

 판사 김태균

목 록

1. 사고 내용

피고가 2010. 2. 16. 11:00경 ○○광역시에서 주식회사 ○○○○○레저가 운영하는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의 관람을 마치고 보트에서 내리다가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.

2. 보험계약

- 보험종목명 : 영업보상책임보험
- 증권번호 : △△ 20#### C##
- 보험기간 : 2010. 1. 12. 24:00 ~ 2011. 1. 12. 24:00
- 보험계약자 : 주식회사 ○○○○○레저
- 피보험자 : 주식회사 ○○○○○레저
- 담보사항/담보내역 : 시설소유자특별약관 (100,000,000원)
- 자기부담금 공제 : 100,000원 끝.